

## 등록 박물관·미술관 세제혜택 내용

### (2020. 1. 1. 기준)

구 분	세제혜택	근 거	비 고
설립 시 세제 혜택 (설립지원)	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	「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2」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2	- 등록 박물관·미술관
	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, 지역자원 시설세 감면		
	설립 계획 승인을 받은 박물관의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	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제23조	- 국가나 지·자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 전용 또는 산지 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: 국·공립박물관 - 광물의 채굴 또는 그 밖에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 사용을 하는 경우 : 설립 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(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미술관만 해당)
운영 시 세제 혜택 (운영지원)	등록 박물관·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	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4조	- 등록 박물관·미술관 운영 법인
	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에 따른 박물관에 진열하거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의 경우 개별소비세 면세	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8조	- 「박물관 미술관 진흥법」에 따른 박물관
	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신고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5년의 기간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	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3조	「박물관 미술관 진흥법」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

박물관·미술관 “입장료”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	「부가가치세법」 제26조 제1항 17호	- 등록 박물관·미술관 -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: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 : 전쟁기념관
박물관·미술관 “교육 재화 및 용역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	「부가가치세법」 제26조 1항 6호 (아래 *참고)	- 등록 박물관·미술관
<p>*참고: 제26조(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)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</p> <p>6.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(**)으로 정하는 것 (**)해당 대통령령(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) ①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, 수강생, 훈련생,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,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.</p> <p>6.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</p>		
박물관에서 진열하는 표본 및 참고품·교육용의 촬영된 필름, 슬라이드, 레코드, 테이프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매체와 이러한 시설에서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수입승인 면세	「부가가치세법」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	- 박물관 또는 그 밖에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 1. 「정부조직법」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동물원, 식물원 및 전시관
등록 박물관(사립 박물관·미술관의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) 등에 유증이나, 「문화재보호법」상의 토지 등을 출연하는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 비과세 징수	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1항 3호	- 공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
등록한 사립박물관·미술관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여 전시 중이거나 보존 중인 등록 자료는 상속세·증여세 징수 유예	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74조	- 등록 박물관·미술관 (사립박물관이나 사립미술관의 경우 공익법인등에 해당)
(정부로부터 허가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) 등록 박물관·미술관 지정기부금 단체기부금에 대한 손비처리	「소득세법」 제34조 및 「법인세법」 제24조 제1항, 동법 시행령 제36조	-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에 따른 박물관

<p>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비용 대상 문화접대비의 손금산입 특례</p>	<p>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3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0조</p>	<p>-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에 따른 박물관</p>
<p>박물관의 학술연구용품 감면세</p>	<p>「관세법」 제90조</p>	<p>- 박물관 또는 그 밖에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 1. 「정부조직법」 제4조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동물원, 식물원 및 전시관</p>
<p>계약전력 4kW 이상으로 교육용 전력요금을 적용받는 전기료 할인</p>	<p>한국전력공사 기본 공급약관 제58조</p>	<p>-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에 따른 박물관·미술관 및 부대시설 (단 사택은 제외)</p>
<p>사립박물관이나 사립미술관 설립 계획을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, 등록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 국영 수송기관에 박물관 자료 및 미술관 자료의 수송을 맡길 경우 운임 등 기타요금의 할인 및 감면</p>	<p>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」</p>	<p>- 설립 계획 승인을 받은 사립박물관·미술관 / 등록 박물관·미술관</p>
<p>평생교육시설의 부동산에 대한 ‘취득세’, ‘재산세’ 감면</p>	<p>「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2」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2</p>	<p>-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에 따른 박물관</p>